대우건설

붙임 1

과천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 써밋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신청 부적격자는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 방문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개요

▣ 공급위치 :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4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3층,지상32층 15개동 총1,317세대 중 일반공급 575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총 세대수 52세대

타입	59A	59T	84A	84B	84C	84T	계
귀 청 배정 세대수	1	1	2	-	-	-	4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미정(추후 입주자 모집공고 참고)

Ⅱ 공급일정

구분	일자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18.01.25.(목)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견본주택 개관	2018.01.26.(금)	당사 견본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접수	2018.01.30.(화) 10:00~14:00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 위 일정은 예정사항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람.

Ⅲ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세대당 1회 한정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자격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자격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청약자격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한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특별공급은 아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유의사항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음.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미성년자인 세명이상의 자녀를 둔자 일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할 때 해당 최하층을 우선 배정됨. 최하층 우선배정시 다자녀가구와 고령자 또는 장애인세대가 경쟁이 발생할경우 고령자 또는 장애인세대에 우선 배정함. [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배정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일반 / 다자녀가구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은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대상주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오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분양가 총액에 9억 초과 주택형은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제외에 따른 중도금대출이 불가하오니 계약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Ⅳ 당첨자 선정 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과천시) 거주 신청자를 우선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당첨자)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신청시 주택형 변경 불가,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특별공급 동호수 지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5항에 의거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 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는**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발표는 지연될 수도 있음.

V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신청자 본인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아래 필수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함
• 신청자 본인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 신청자(배우자 포함)로 간주되고,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대리 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본인 신청시 (공통 서류)	필수 서류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 (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이 안될 경우 제출
	추가 서류 (해당자)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등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청약자(신청자) 인감(서명)날인된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대리인	대리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VI 위치도 / 견본주택

위치도

■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 부림동 49번지

견본주택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 써밋갤러리 3층
■ 문위 1877 - 5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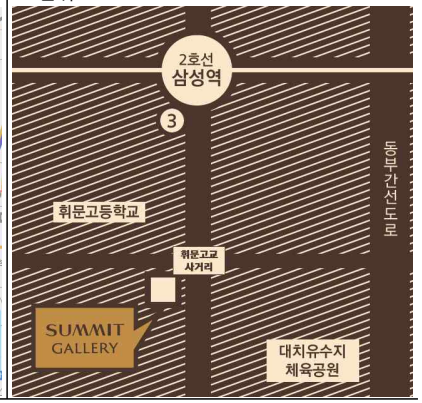

VII 상품안내

59A (25.95py)		**59T** (26.00py)	
84A (34.61py)		**84B** (34.55py)	
84C (35.01py)		**84A** (94.96py)	

붙임 2